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(장종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66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0.

발 의 자 : 장종태 · 박정현 · 소병훈
정준호 · 황명선 · 복기왕
김남준 · 박지혜 · 황운하
안태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금융기관이 자기의 재원으로 실행한 대출에 대하여 국가가 그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음.

그런데 이차보전사업은 대출잔액과 금리 변동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지고 그 부담이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발생할 수 있음에도, 현행 법에는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.

이에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이차보전사업별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,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부담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제17호, 제34조의2 및 제71조제8호 신설).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제34조의2에 따른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

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2(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의 작성) ① 기획예산처장관

은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
기관이 자기의 재원으로 실행한 대출에 대하여 국가가 그 이자의
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(이하 이 조에서 “이차보전
사업”이라 한다)에 대한 재정소요 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에는 이차보전사업별로 다음 각
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이차보전 대상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
2. 제1호에 따른 대출잔액의 연도별 재정소요(해당 예산안 또는 기
금운용계획안의 대상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
재정소요를 말한다)
3. 해당 이차보전사업을 직접 융자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와의 재
정소요 비교

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재정소요는 금리 변동을 고려하여 추계하여야 한다.

④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의 작성 기준, 방법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1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34조의2에 따른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예산안의 첨부서류) 제33 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 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1. ~ 16.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34조(예산안의 첨부서류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16. (현행과 같음) <u>17. 제34조의2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재정소요 추계서</u> <u>제34조의2(이차보전사업 재정소 요 추계서의 작성) ① 기획예 산처장관은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자기의 재원으로 실행한 대출에 대하 여 국가가 그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(이하 이 조에서 “이차보 전사업”이라 한다)에 대한 재 정소요 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 계서에는 이차보전사업별로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

	<u>1.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이차 보전 대상 대출잔액 및 만기 별 분포</u> <u>2. 제1호에 따른 대출잔액의 연 도별 재정소요(해당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대상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의 기간에 대한 재정소요를 말한다)</u> <u>3. 해당 이차보전사업을 직접 융자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와의 재정소요 비교</u> <u>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재정소 요는 금리 변동을 고려하여 추 계하여야 한다.</u> <u>④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 계서의 작성 기준, 방법 및 서 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</u>
제71조(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)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(이하 “기금운용계획안등”이라 한다)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	제71조(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 1. ~ 7. (생략) <u><신설></u>	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<u>8. 제34조의2에 따른 이차보전</u> <u>사업 재정소요 추계서</u>
--	--